

ISLAND OF Guam
OFFICE OF THE GOVERNOR
HAGÁTÑA, GUAM 96932
U.S.A.

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행정지시: No.2020-06

코로나 19 공동 대응 노력 (COVID-19 Unified Response Effort: "CURE") 대응팀 구성
및 사회적 거리 조치의 범위

- 2020년 3월 14일, 루 레온 게레로 괌 주지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이로부터 자국민과 여행객들을 보호하기 위해 Organic Act of Guam에 의해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괌에 공중 보건 비상상태를 선포함.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추가적으로 2개의 행정지시를 공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의무화함.
- 불필요한 모임 및 사회 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전략을 실행할 필요가 있음.
- 현 정부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공공 기관에서 진행되는 대중 공개 회의의 참석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려는 현 정부의 노력을 위태롭게 함.
- 공중 보건 비상상태 선포 후, 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 사례는 지정 기관과 가정에서 모니터링되고 있음.
- 괌 의료진들과 협의를 통해 공공 의료 시설 및 민간 의료 시설은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자원을 보존하며 효율성이 촉진되어야 한다고 결정됨.
- 괌 정부는 최선의 노력의 일환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괌 보건 시스템을 준비하고, 맞춤 전환해야 함.
- 연방정부는 코로나19를 확산 방지를 위해 특별 자원을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함.
- 민간 및 공공 단체는 의료 대응을 최우선시하고 제공된 서비스는 요금표를 바탕으로 연방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의해 상환될 것이라는 데 동의함.
- 이에, 루 레온 게레로 괌 주지사는 Organic Act of Guam에 의해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하기의 사항을 지시함:

1. 비 주요 정부기관 운영 중단

행정지시 No. 2020-04 및 2020-05에 의해 운영 중단 중인 비 주요 정부기관은 2020년 4월 13일까지 운영 중단 유지.

2. 전 학교 휴교령

행정지시 No. 2020-04에 의해 모든 공/사립 학교들은 2020년 4월 13일까지 휴교. 제

17조 6항 4호에 준수하여, 본 행정지시가 발효되는 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행된 휴교에 따른 결석은 무단결석으로 치부되지 않음.

3. 모임 및 집회 금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행정지시 No. 2020-05에 의해 금지 중인 공공장소에서의 모임 또는 집회는 2020년 4월 13일까지 연기됨.

4. 공공 공원 및 해수욕장 폐쇄

본 지침은 즉각 발효되며 2020년 4월 13일까지 광 공원 및 해수욕장에서의 활동을 금지함. 다만, 행정지시 No. 2020-04, 5항목에 명시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한다는 조건 아래 개인의 정신적/육체적 운동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5. 정부 공개법 특정조항 중단

제5조 8103, 8107, 8108, 8109, 8110, 8114, 8115목은 2020년 4월 13일까지 중단된다. 현 비상사국에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공공기관들은 회의록을 작성해야 함. 정부 공개법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공공기관 회의에서 행해지는 조치는 제5조 8113.1목을 준수할 때까지 유효하지 않음.

6. 코로나 19 공동 대응 노력 (COVID-19 Unified Response Effort: "CURE") 대응팀 구성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에 맞서 적절한 의료대응 및 관련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CURE" 대응팀이 구성됨. 마이클 W 크루즈 대령(Michael W. Cruz, M.D.)은 주지사의 의료 상임고문(Chief Medical Advisor) 및 광 육군 주방위군 외과총괄을 겸임하고 있으며, 공중 보건당국으로부터 본 대응팀 총괄로 임명 받음. 본 대응팀은 공중 보건국과 광 주지사 및 기타 공공/민간 의료기관의 의료진들로부터 승인된 외과의료진으로 구성됨.

의료 상임고문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는 주지사의 공중 보건 및 의료적 지시를 이행할 책임을 가지고 있음. 보건당국의 임명을 받은 의료 상임고문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부여받음.

a. 의료시설의 직접적인 사용

제10조 19항 6호 19502목에 준하여, 광의 모든 의료기관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의료시설 이용에 있어 해당 의료시설의 운영 및 지휘권은 광 보건당국에 옮겨질 수 있음.

b. 의료진 지휘

제10조 19항 6호 19608목에 준하여, 광의 모든 의료진들은 보건당국, 광 보건 사회 복지국(DPHSS) 또는 CURE 대응팀의 조치에 따라 의료시설 및 지정 격리시설 환자의 접종, 치료, 검사 진행을 도와야 함.

c. 표준화된 지침 수립

CURE 대응팀의 직접적인 의료지원을 맡은 모든 의료시설과 의료진 및 직원 모두는 표준화된 절차를 준수 해야함.

d. 의료 물품 관리

제10조 19항 5호 19505목에 따라 보건당국은 완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

7. 책임

제10조 19항 19804(b)(2)목에 준하여, 코로나19의 대응 계획, 지시, 지침 또는 방침을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 시설 또는 의료진 및 의료시설은 정부 의료시설 또는 그 대리인 또는 피고용인으로 운영되는 모든 기관이 법적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면책,

부채의 제한, 권리 또는 치료를 갖게 됨.

8. **괌 메모리얼 병원(Guam Memorial Hospital: GMH)**

코로나19 대응 계획의 일환으로 괌 메모리얼 병원(이하 GMH)은 코로나19 지정 진료소로 선정됨. GMH는 보건당국의 지휘아래 코로나19 감염환자 및 관련 증상 환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임. 현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괌 정부와 협업에 동의한 GMH의 관련 의료 비용은 괌 정부와 GMH간에 체결된 MOU에 명시된 비율로 환급 또는 청구됨.

9. **Guam Regional Medical City (GRMC) 의료 기관**

코로나19 지정 진료소로 선정된 GMH는 현재 괌의 모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운영되기에 충분하지 않음으로 GRMC가 GMH의 코로나19 비감염 환자들의 치료 시설로 쓰일 것임. GRMC 시설의 모든 의료 서비스는 CURE 대응 팀에서 요구에 의해 제공되는 것임으로 시설의 다양한 부서와 시설(이용 가능 여부에 따라), 시설청소, 식이요법, 의료 서비스 및 의약품의 사용을 포함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괌 정부에서 제공한다. 본 행정지시 7목에 준하여, GRMC의 직원 및 외주업체에도 해당됨. 현 비상사태 동안 GRMC의 관련 의료 비용은 괌 정부와 GRMC간에 체결된 MOU에 명시된 비율로 환급 또는 청구됨.

10. **의료시설**

코로나19 대응 계획의 일환으로 수술센터 및 보건소 등을 포함한 괌 내 모든 의료시설은 CURE 대응팀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본 행정지시 7목에 준하여, CURE 대응팀과 함께 현 비상사태에 대응하고 있는 모든 의료시설, 직원 및 외주업체에도 해당됨. 해당 의료시설은 CURE 대응팀이 제시한 표준요금 또는 MOU에 명시된 비율로 환급 또는 청구됨.

11. **의료정보에 대한 접근 및 공개**

제10조 19항 6호 19607목은 CURE 대응팀과 함께 현 비상사태에 대응하고 있는 모든 의료시설, 직원 및 외주업체 등에게 해당됨.

12. **집행**

본 행정지시 No. 2020-03, 2020-04, 2020-05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개인이나 사업자는 벌금 또는 사업허가 해지를 받을 수 있음. DPHSS와 국세청(DRT)은 본 행정지시를 집행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괌 경찰청의 도움을 받아 집행할 수 있음.

13. **분리 가능성**

본 행정지시나 상기의 조항이 개인에게 유지되는 경우, 무효는 무효한 조항이나 적용 없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 지시의 다른 조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며, 이 목적을 위해 이 지시의 조항은 분리될 수 있다.

2020년 3월 24일 괌 하갓냐에서 공표

루 레온 게레로
Maga'hågan Guåhan
괌 주지사